

『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
대표 출신 이상욱 의원입니다.

□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38호

「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
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서울시는 2020년부터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
시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
습니다. 하지만 사회적 고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
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거나, 사업에 참여하고 난 이후
에도 중도 포기하여 재고립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청년들
이 있습니다.

- 이에,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립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참여 실적, 횟수,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.

-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고립청년에게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상품권이나 물품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구체적인 지원 내용,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감사합니다.